

의안 번호	1692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【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심 사 보 고 서</b></p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12. 3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12. 3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12. 14.(월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기획예산실장 김영환)

### 가. 제안이유

소관업무를 알기 쉽게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, 팀을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과 명칭 변경 (안 제8조)
  - 주민생활지원과 → 복지지원과
- 분장사무 조정
  - 일자리경제국 (안 제6조)
    - 지방소득세, 체납정리, 세외수입관리, 통합기동징수 등에 관한 사항
  - 복지환경국 (안 제8조)
    - 여성, 아동, 청소년, 보육,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~ 제120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### **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영숙)**

- 본 개정 조례안은 부서 명칭 변경과 팀 신설을 통해 조직의 변화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「지방자치법」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### **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 근거법규

## 지방자치법

-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##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- 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“라 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

8 (제231회-본회의제3차부록)

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